

공고 제2018 - 7호

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

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 :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
2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
3. 공고방법 : 순창군의회 홈페이지
4. 공고내용 : 결산검사위원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
(자세한 내용 붙임 문서 참조)

붙임 2017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부.

2018년 8월 27일

순 창 군 의 회 의

